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2

제출년월일 : 1995. 7. .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(대통령령)의 개정으로
- 도의 부지사를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등 2명을 두도록 함에 따라 부지사의 배치근거와 담당사무의 대강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

- 부지사의 배치 근거 부여(제1조)
- 부지사의 분장사무 규정(제2조)
 - 행정부지사 : 일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
 - 정무부지사 : 정무 업무에 관한 사항 등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제2항
-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이 조례는” 을 “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충청북도에 두는” 을 “충청북도에 두는 부지사 및”으로 한다.

제2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14조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 (부지사) ①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
②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행정부지사

-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(다만,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.)
-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지도·감독

2. 정무부지사

-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
- 의회와 관련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
-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-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
- 국회 등과 관련되는 대외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
- 정당·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
-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,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